

전라남도 고시 제2010 - 87호

산촌생태마을 기본계획 고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 서산 대곡 산촌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4. 5

전라남도지사

- 1. 사 업 명 : 장성 서산 대곡 산촌생태마을 조성
- 2. 사업목적 : 산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생산기반조성으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 3. 사업내용
 - 산촌녹색체험 (2종) : 산림문화회관 1식, 자연치유마당 1식
 - 마을기획운영 (3종) : 홍보마케팅 1식, 전자상거래구축 1식, 주민교육 및 훈련 1식

○ 산촌생태마을 기본계획 내역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산촌생태마을 조성	5종	1,400	980	420	-
	산촌녹색체험	2종	1,356	949	407
	마을기획운영	3종	44	31	13

장성 서산 대곡 산촌생태마을 기본 계획 승인

- 위 치 : 장성군 서삼면 대곡리
- 사업기간 : 2010 ~ 2011 (2년간)
- 사 행 자 : 장성군수
- 사 업 비 : 1,400백만원 (국비 980, 지방비 420)

□ 세부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규모	재원별 사업비				년도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10년 '11년
합계	5종	1,400	980	420		1,400	266 1,134
가. 산촌녹색체험시설	2종	1,356	949	407		1,356	222 1,134
- 산촌문화회관	1식 (11동)	1,350	945	405		1,350	216 1,134
- 자연치유마당	1식	6	4	2		6	6
나. 마을기획운영	3종	44	31	13		44	44
- 홍보 및 마케팅	1식	19	14	5		19	19
- 전자상거래구축	1식	16	11	5		16	16
- 마을주민교육 및 훈련	1식	9	6	3		9	9

전라남도 고시 제2010 - 89호

목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목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10. 4. 5

전라남도지사

- 1. 목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다음
- 2. 목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도면 : 게재생략
- 3. 관계 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계획과(061-270-8625) 및 해당 당사무소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목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목포시 석현동 일원(석현지구)

- 1. 용도지역 지정(변경)

가. 용도지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8,020	-	168,02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68,020	감)14,275	153,745	91.5
주거 지역	-	증)14,275	14,275	8.5

■ 용도지역 지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목포시 석현동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4,275	500	·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현 실정에 맞게 용도지역을 부여함.

2. 제1종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4	석현지구 단위계획구역	목포시 석현동 일원	168,020	-	168,02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역 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석현지구 단위계획구역	· 명칭변경 · 석현1지구→석현지구	· 구역명 중복에 따른 명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① 도 로

구분	구 도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등급	구분 번호					
기정	대로	1 3	간선 도로	대1-1 석현동 511-4도	하구북 옥암동 946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996-264호 (1996.95)
변경	대로	1 3	간선 도로	대1-1 석현동 511-4도	하구북 옥암동 946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제 19996-264호 (1996.95)
기정	중로	1 51	집산 도로	대1-1 석현동 503-16수	농수산물 도매시장 석현동 1128-44구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3-99호 (2004.1.5)
신설	중로	1 73	집산 도로	대3-6 석현동 1066-2답	중3-77 석현동 555-9답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64	국지 도로	석현동 1090-1도	석현동 1039-5도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변경	중로	2 64	국지 도로	대1-3 석현동 1100-2도	대1-3 석현동 1039-5도	일반 도로	목포고시 제2008-33호 (2008.4.18)
신설	중로	3 76	국지 도로	중1-51 석현동 1050-3답	중2-64 석현동 1039-2답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77	국지 도로	대1-3 석현동553답	중1-73 석현동 555-9답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296	국지 도로	대3-6 석현동 1068-2답	대1-1 석현동 624-5원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297	국지 도로	소1-296 석현동 1063-2답	소1-296 석현동 1060답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298	국지 도로	중1-73 석현동 1065-2답	소1-296 석현동 1064-2답	일반 도로	

구분	구 도			연장 (m)	기정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299	10	국지 도로	대로3-6 석현동 1083-1답	중1-73 석현동 1086-2답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300	11	국지 도로	중2-64 석현동 1039-5도	대1-3 석현동 1039-5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608	8	국지 도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석현동 1041-1답	중3-76 석현동 1040-2답	일반 도로	
폐지	소로	2 227	8	국지 도로	대1-1 석현동 606-8도	대1-3 석현동 563-5도	일반 도로	전남고 제68호 (77.3.30)
폐지	소로	2 477	8	국지 도로	대3-6 석현동 1068-2답	석현동 1063-2답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대로1-3	대로1-3	· 노선 선행 변경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중로1-73	· 노선 신설, 연장 : 증)49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변경	중로2-64	중로2-64	· 노선 변경, 연장 : 증)1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중로3-76	· 노선 신설, 연장 : 증)213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중로3-77	· 노선 신설, 연장 : 증)45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1-296	· 노선 신설, 연장 : 증)333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1-297	· 노선 신설, 연장 : 증)17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1-298	· 노선 신설, 연장 : 증)55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1-299	· 노선 신설, 연장 : 증)15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1-300	· 노선 신설, 연장 : 증)13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2-608	· 노선 신설, 연장 : 증)65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폐지	소2-227	-	· 노선 신설, 연장 : 증)21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폐지	소2-477	-	· 노선 신설, 연장 : 증)10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른 도로망 계획 반영

②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신설	74	주차장	석현동 1047-2답 일원	-	증)1,166	1,166
신설	75	주차장	석현동 1065-3답 일원	-	증)900	900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74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166㎡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계획 반영
75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900㎡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계획 반영

③ 철 도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부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중점 경과지				
기정	일반철도 (본선)	목포시 경계	목포시 호남동 1-1 목포역	6,290 (460)	215,938 (5,570)	목포시고시 제2008-42호 (2008.6.13)	

※ ()는 지구내 면적 및 연장임

④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부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신설	120	공원	소공원	석현동 1039-5도 일원	-	증)448	448
신설	121	공원	소공원	석현동 1128-2구 일원		증)2,338	2,33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0	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448㎡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계획 반영
121	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2,338㎡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계획 반영

⑤ 녹 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부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호남선 복선화 철도변	32,880	-	32,880 (9,190)

※ ()는 지구내 면적임

⑥ 광 장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부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14	광장	교통 광장	목포시 석현검문소 앞	675	-	675

⑦ 시 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부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5	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석현동 1086-1 일원	12,060	2,215	14,275

■ 시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5	시장	· 면적변경 증) : 2,215㎡	· 목포농산물 도매시장의 추가 필지 매입으로 인한 시장 구역계 변경

⑧ 학 교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부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67	학교	초등 학교	석현동 1060 일원	12,240	-	12,240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소로2-610	· 노선 신설, 연장 : 증)135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2-611	· 노선 신설, 연장 : 증)165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2-612	· 노선 신설, 연장 : 증)5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2-613	· 노선 신설, 연장 : 증)235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2-614	· 노선 신설, 연장 : 증)10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3-395	· 노선 신설, 연장 : 증)20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반영

②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후	
신설	76	주차장	석현동 868답 일원	-	증)360	360
신설	77	주차장	석현동 902전 일원	-	증)1,366	1,36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6	주차장 - 면적 : 360㎡	· 주차장 신설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계획 반영
77	주차장 - 면적 : 1,366㎡	· 주차장 신설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계획 반영

③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부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22	공원	소공원	석현동 987전 일원	-	증)2,113	2,113	-
신설	123	공원	소공원	석현동 879전 일원	-	증)4,260	4,260	-
신설	124	공원	소공원	석현동 898전 일원	-	증)2,273	2,273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2	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2,113㎡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계획 반영
123	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4,260㎡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계획 반영
124	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2,273㎡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계획 반영

④ 학교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부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후	
기정	31	학교	중학교	석현동 895 일원	15,000	-	15,000 (5,500)
기정	39	학교	카톨릭 대학교	석현동 894-1 일원	23,158	-	23,158 (15,254)

※ ()는 지구내 면적임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1	A1	1,080	석현동 1001-1전 일원	1,080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A2	A2	20,485	석현동 982-11전 일원	20,485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3	A3	593	석현동 984주 일원	593	
A4	A4	202	석현동 893전 일원	202	
A5	A5	10,714	석현동 874전 일원	10,714	
A6	A6	4,153	석현동 986전 일원	4,153	
A7	A7	5,793	석현동 870전 일원	5,793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A8	A8	6,906	석현동 1008전 일원	6,906	
A9	A9	4,688	석현동 867전 일원	4,688	
A10	A10	6,205	석현동 877-1전 일원	6,205	
A11	A11	15,395	석현동 909-1전 일원	15,395	
A12	A12	15,881	석현동 912답 일원	15,881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제 책 내 용
A1~A12	용도	허용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허용 도를 제외한 용도
		전장	· 공동주택
	높이	불허	·주유소, 석유판매소, 화학가스판매소, 도로류판매소, 시내 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화학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건 폐 율	60% 이하
	배 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태	형태	·건축물의 주상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	
		·지붕형태 : 평지붕을 허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옥상층에 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 여야 하고, 옥상녹화를 권장 ·담장 및 대문 :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 (높이 1.2m 이하)	
색채	색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 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 :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유도	
		건축선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 공동주택으로 변경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가능
- ※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
침도 참조

③ 상장골포장 임구 일원(연산3지구)

1. 제1종지구단위계획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① 도로

구분	등급	구도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능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신설	소로	2	615	8	국지 도로	소2-616 연산동 577-4도	소2-544 연산동 587답	소2-544 연산동 587답
신설	소로	2	616	8	국지 도로	소2-615 연산동 577-5대	소2-615 연산동 589전	소2-615 연산동 589전
신설	소로	2	617	8	국지 도로	대1-6 연산동 578-5대	소2-616 연산동 577-5대	소2-616 연산동 577-5대
신설	소로	3	396	6	국지 도로	연산동 686-5도	소2-615 연산동 575-2도	소2-615 연산동 575-2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신설	-	소로2-615	노선 신설, 연장 : 증)292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2-616	노선 신설, 연장 : 증)127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2-617	노선 신설, 연장 : 증)2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반영
신설	-	소로3-396	노선 신설, 연장 : 증)15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반영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1	A1	3,198	연산동 575-6전 일원	3,198	
A2	A2	5,685	연산동 596전 일원	5,685	
A3	A3	5,967	연산동 598전 일원	5,967	
A4	A4	6,472	연산동 585전 일원	6,472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제 회 내 용
A1~A5		하용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허용 도를 제외한 용도
		관장	-
		발허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로류판매소, 시내 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 태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	
		· 지붕형태 : 평지붕을 허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옥상층에 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 여야 하고, 옥상녹화를 권장 · 담장 및 대문 :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 (높이 1.2m 이하) · 건축물 외벽의 재료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 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 :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유도	
		색 채	
		건축선	-

제 1 종 일반 주 거 지 역

※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보헌정사 하단 일원(용해3지구)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신설	소로	2	618	8	국지 도로	대1-1 용해동 145-9도	소2-552 용해동 104대	일반 도로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신설	-	소로2-618	노선 신설, 연장 : 증)10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반영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1	A1	4,036	용해동 109전 일원	4,036	지용적
A2	A2	5,574	용해동 104-1전 일원	5,574	공동개발권장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제 회 내 용
A1~A2	하용	하용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허용 도를 제외한 용도
		관장	-
		불허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로류판매소, 시내 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형태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		
	형 태	· 지붕형태 : 평지붕을 허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옥상층에 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 여야 하고, 옥상녹화를 권장 · 담장 및 대문 :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 (높이 1.2m 이하) · 건축물 외벽의 재료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 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지상에 노출되는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 :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유도
		건축선	-

※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본읍등 마을 일원(죽산지구)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① 도로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기정	소로	2	574	8	국지 도로	중1-12 연산동 982-35도	소2-35 연산동 987-6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619	8	국지 도로	소3-372 연산동 954-24대	소2-621 연산동 980-10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620	8	국지 도로	소3-372 연산동 957-7전	중2-18 연산동 942-5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621	8	국지 도로	소2-622 연산동 985-29전	소3-372 연산동 957-7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622	8	국지 도로	소2-574 연산동 985-21전	소2-574 연산동 985-19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72	6	국지 도로	중2-18 연산동 954-70도	중1-12 연산동 957-2전	일반 도로	목포시고시 제2007-42호 (2007.5.11)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신설	-	소로2-619	· 노선신설, 연장 : 17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변경
신설	-	소로2-620	· 노선신설, 연장 : 5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변경
신설	-	소로2-621	· 노선신설, 연장 : 15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변경
신설	-	소로2-622	· 노선신설, 연장 : 12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망 계획 변경

②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78	주차장	연산동 980-11전 일원	-	증)550	550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78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550㎡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계획 변경

③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공원명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25	공원	소공원	연산동 980-11전 일원	-	증)1,230	1,230
신설	126	공원	소공원	연산동 985-19전 일원	-	증)1,490	1,49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25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1,230㎡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계획 변경
126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1,490㎡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계획 변경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1	A1	20,422	연산동 954-22전 일원	20,422	
A2	A2	2,276	연산동 954-45대 일원	2,276	
A3	A3	6,535	연산동 954-104중 일원	6,535	지율적
A4	A4	1,706	연산동 597-2전 일원	1,706	공동개발권장
A5	A5	4,214	연산동 980-6전 일원	4,214	
A6	A6	7,814	연산동 983-5전 일원	7,814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제 획 내 용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하용	용도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허용 도를 제외한 용도
		관장	-
	A1~A6	용도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로류판매소, 시내 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구분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제 획 내 용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A1~A6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추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
		형태	· 지붕형태 : 평지붕을 허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옥상층에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옥상녹화를 권장 · 담장 및 대문 : 부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 (높이 1.2m 이하) · 건축물 외벽의 재료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반부 :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type)을 사용하도록 유도
		색채	
		건축선	-

※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

전라남도 고시 제2010 - 92호

신대배후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력지구 신대배후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전라남도고시 제2010-69('10.3.19)호로 고시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법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5

전라남도지사

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력지구 신대배후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다음

○ 도시관리계획 도면(1/1,200)으로 지형도면을 갈음함

나.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수 4개 증가 및 주 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교통종합개선 보완에 따른 버스베이, 가감속 차로 추가 지정 및 변경,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다. 관계도면 : 개재생략

라. 열람 및 문의 : 관계도서에 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과 (061-760-5381) 및 순천시 도시과(061-749-3446)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력지구 신대배후단지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도시계획시설

가. 교통시설

■ 도로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면적 (㎡)	노선수	면적 (㎡)	노선수	면적 (㎡)	노선수	면적 (㎡)
합 계	기정	119	21,194	379,681	20	5,848	123,060	27	4,156
	변경	123	21,818	384,133	21	6,166	123,328	28	4,192
계	기정	65	18,952	368,192	18	5,537	119,950	27	4,156
	변경	71	19,628	374,259	20	6,093	122,598	28	4,192
일 반 도 로	기정	11	10,007	275,661	2	3,277	96,771	-	-
	변경	11	10,007	275,661	2	3,277	96,771	-	-
중로	기정	14	3,172	40,450	-	-	-	5	774
	변경	13	3,154	40,146	-	-	-	4	756